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법무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공무원보수규정」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봉급액 등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를 검사의 보수 지급에 반영하여 검찰총장 및 검사의 봉급액을 각각 3퍼센트 인상하려는 것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입법예고(2025. 5. 2. ~ 5. 12.) 예정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봉급 지급에 관한 적용례)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

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.

검사의 봉급표(제7조 관련)

(월지급액, 단위: 원)

직명	호봉	봉급액
검찰총장		9,293,500
검찰총장 외의 검사	17	9,279,800
	16	9,262,100
	15	8,736,600
	14	8,213,600
	13	7,744,700
	12	7,348,800
	11	7,157,900
	10	6,933,400
	9	6,558,200
	8	6,111,200
	7	5,725,800
	6	5,363,800
	5	5,014,900
	4	4,663,300
	3	4,323,800
	2	3,984,900
	1	3,536,500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법무부 검찰과	
연 락 처	(02) 2110 - 4210, 4213